



문서번호	총무과-35601
결재일자	2014. 12. 9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부구청장 방침 제513호

★주무관	인사팀장	총무과장	행정관리국장	부구청장
이혜숙	송재훈	이창호	소판수	전결 12/09 유재룡
협 조	기획예산과장	박기웅		
	법률전문관	권설아		
	법제팀장	이상수		

**서울특별시 성동구  
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**



**성 동 구**  
**( 총 무 과 )**



#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

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전환에 따른 지방소득세 업무량 증가로 팀을 신설하고 세무부서간 업무와 인력을 적정 배치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## I 추진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## II 주요 개정 사항

### 1. '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업무' 세무2과에 신설(안 제17조)

- 안 제17조에 “지방소득세 부과·징수 업무” 신설  
※ 정원 4명(6급1, 7급2, 8급1) 증원(2014.9.16)

### 2. '세외수입 업무'를 세무2과에서 '세무1과'로 이관(안 제16조)

- 안 제16조에 “세외수입 관리·분석에 관한 사항” 및 “세외수입 전년도 체납징수(일반회계)에 관한 사항”을 신설
- 안 제17조제11항(세외수입 관리·분석에 관한 사항) 및 제12항(세외수입 전년도 체납징수(일반회계)에 관한 사항) 삭제

### Ⅲ

## 추진 일정

- 입법예고: 생략
  -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법」 개정·시행에 따른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 입법예고 생략
- 심사 및 평가: 2014. 12. 9.(화)
  - 규제심사: 기획예산과
  - 부패영향평가: 감사담당관
  - 성별영향분석평가: 보육가족과
- 조례규칙심의회 개최: 2014 .12. 11.(목)

붙임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1부. 끝.